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 운영규정

2024년 05월 24일 제정

2024년 06월 04일 개정

2025년 01월 14일 개정

전 문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은 대학 노동자의 권익 옹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교육 노동자의 양심으로 대학 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대학상을 구현하기 위한 대학노동자의 단결체이며,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학의 민주화를 이루는 한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고등교육 발전을 이루는데 앞장선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조직은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금산군에 둔다.

제3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과 강령 및 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을 수호하고, 고등교육의 발전에 앞장서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대학 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 및 조직 강화에 관한 사업
- ② 실질 임금의 향상 및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업
- ③ 대학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에 관한 사업
- ④ 대학 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 수호에 관한 사업
- ⑤ 대학의 자주화, 민주화 및 고등교육 발전에 관한 사업
- ⑥ 소규모 사업장 대학 노동자의 조직화와 열악한 노동 조건 해소 사업
- ⑦ 생활권 확보를 위한 환경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업
- ⑧ 민주 사회 단체, 민주 교육 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업
- ⑨ 기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6조(조직대상) 조합의 조직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에 위반되지 않는 대전·세종·충청남도·충청북도의 고등교육기관 및 유관기관의 노동자로서 설립 정신과 규약에 찬동하는 자, 노동조합에 채용된 자,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를 조직대상으로 한다.

제7조(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 및 탈퇴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이 되며, 탈퇴도 가입 절차에 준한다.

제8조의(사면 및 복권)

① 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 및 조합원은 징계 결정 뒤 6개월이 경과하면 위원장에게 사면 또는 박탈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복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합원 또는 징계를 받은 자가 사면 또는 복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상자와 이유를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사면 또는 복권 신청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부) 조합은 조직 관리와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부를 둔다.

① 지부는 단위 사업장별로 설치하되,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위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지부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부는 조합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 운영 되어야 하며, 지부운영규정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총회, 집행부회의를 둔다.

② 위원장 및 지부장은 해당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조합의 해산 결의는 재적 조합원 및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해산 및 청산)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① 조합의 해산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조합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3인 이상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 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청산을 개시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1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① 각종 회의에 참가권, 발언권 및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의결권.
- ② 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③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 ④ 조합 시설의 이용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 ⑤ 각종 회의 결정 사항 및 업무에 대해 공개, 열람, 설명을 요구할 권리
- ⑥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의 권리

제12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①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 ② 조합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 ③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 ④ 조합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⑤ 각종 법령과 노사 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 ⑥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결의된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13조(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여성 할당제) 선출직을 제외하고 30% 이상의 여성 할당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5조(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 ① 총회
- ② 대의원회
- ③ 중앙운영위원회
- ④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⑤ 선거관리위원회
- ⑥ 회계감사위원회

제1절 총회

제16조(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운영) 총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정기 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 ② 지부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정기 총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 ③ 전 2호 및 3호의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이 전항의 기한 내에 조합원 총회를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⑤ 총회의 소집은 회의 일로부터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조합과 지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 수립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단체 교섭 및 체결에 관한 사항
 6. 상급 노동 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전 사업장에 해당되는 쟁의 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8. 조합의 분할, 합병 및 조직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
 9. 조직운영상 합병, 분할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상설위원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특별 부과금 부과 및 특별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2. 자산 및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3. 연맹(조합)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의하여야 한다. 단, 조합의 총회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전 사업장에 해당되는 징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20조(구성) 대의원회는 총회 다음가는 의결 기구로 각 지부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자를 포함하여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대의원회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대의원회 소집 요건은 제18조 2항을 준용한다.

③ 대의원회 소집 절차는 제18조 3,4,5항을 준용한다.

제22조 (기능)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 사항 중 제19조 2항 각 호를 제외한 사항으로 한다.

제23조(대의원 배정 및 선출) 대의원 배정 및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되는 위원장은 본조 대의원으로 당연직으로서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은 지부 단위로 배정하되 조합원 75명의 범위에서 1명씩 선출한다.(당연직을 제외하고 ~75명 1명, 76명 ~150명 2명, 151명~225명 3명, ..., 으로 배정한다.)

③ 대의원은 각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지부장 및 지부임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대의원의 자격) 조합 대의원대회 개최 시 대의원 자격을 아래와 같이 한다.

① 규약이 정한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지부의 경우 조합 대의원 자격을 정지시킨다.

② 조합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지부의 경우는 재적 인원 중 사고로 처리한다.

③ 조합비 압류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지부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3절 중앙운영위원회

제26조(구성 및 소집)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아래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부별 1인씩 선출한다.

2. 위원장 소속 지부는 1인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7조(기능)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임시 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②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 상정 안건 심의
- ④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 ⑤ 조합원의 징계결의 및 징계 재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⑥ 규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 ⑦ 조합 임원의 유고시 직무 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 ⑧ 회계감사 요청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⑨ 선거관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⑩ 중앙교섭위원 및 쟁의 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⑪ 노동쟁의 및 쟁의 기금 집행에 관한 사항
- ⑫ 조합의 고문 및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⑬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및 복귀에 관한 사항
- ⑭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⑮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심의, 의결에 속하지 않는 중요 의결 사항

제4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28조(구성과 운영)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상설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②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합위원장의 추천과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임명한다.
- ③ 각 위원회는 기능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9조(구성 및 운영)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선거 관리 규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0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 ①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회계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소집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대의원,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대의원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수임 사항 감사.
- ②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 감사.
- ③ 지부의 회계감사 점검 및 조사.

제7절 지도위원

제32조(지도위원)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지도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지도위원의 역할과 예우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절 회의

제33조(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특별 결의) 조합의 결의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③ 조합의 합병·분할 및 조직 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
- ④ 긴급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제35조(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위원장 1명
- ② 수석부위원장 1명
- ③ 부위원장 약간명
- ④ 사무처장 1명
- ⑤ 회계감사위원 2명

제36조(권한 및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
 -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되며,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4. 규약·제 규정의 임시 해석권을 가지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5. 조합의 사무직원의 임면권.
 - 6.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천권.
 - 7. 고문, 자문, 지도, 전문 위원 위촉권
- ② 수석부위원장
 -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한다.
 - 2.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 ③ 부위원장
 - 1. 위원장을 보좌하며, 각종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④ 사무처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의 관리책임을 맡는다.
3. 회계감사에 응하며, 그 책임을 맡는다.
4. 각종 회의의 회의 자료 작성, 업무 보고 등의 책임을 진다.
5. 조합의 대변인이 된다.

⑤ 회계감사위원

1. 회계감사위원은 6개월에 1회에 걸쳐 조합의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2.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3. 지부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회계감사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중앙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37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단,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는 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 ②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 ③ 회계감사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참가와 참가 인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단,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는 자 순으로 회계감사로 선출한다.

제3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9조(보선)

- ① 조합은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 ② 이 경우 조합은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이라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40조(탄핵)

- ① 임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 ② 탄핵 소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한 경우
 2. 대의원 및 조합원 3분의 10이상이 요구한 경우
- ③ 탄핵 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6장 사무처

제41(설치 및 구성) 사무처에 전문 상근 간사를 둘 수 있다.

- ① 사무처에는 국장 및 부장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처 보수에 관하여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7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42조(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고,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조합이 교섭 진행의 필요에 의해 지부장 또는 특정인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여, 지부별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상급단체 또는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제43조(체결)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위원장에 있으며 아래의 절차로 체결한다.

- ① 지부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총회 승인 후 위원장의 인준을 얻어 체결하고 교섭 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44조(단체교섭 안) 지부 단체교섭 안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부 총회 또는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45조(단체교섭단 구성) 조합의 단체교섭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각지부의 단체교섭단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대표교섭위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제46조(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 사항의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47조(조정신청) 지부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며, 위원장 명의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지부의 조정신청은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지부 집행부회의(대의원회)의 결의로서 한다.

제48조(쟁의행위) 쟁의행위 결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조합의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② 지부의 쟁의행위는 쟁의행위 결의 사유와 내용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은 후 조합의 승인 거쳐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③ 조합 및 지부의 쟁의행위의 찬반투표 결과는 모든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공개한다.
- ④ 조합 및 지부의 쟁의행위 관련한 모든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등은 조합에서 쟁의 행위기간동안 보존하며 쟁의 행위 이후에는 1년동안 보존하며 조합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9조(쟁의기금) 쟁의기금은 별도로 적립하며 그 액수와 용도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고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집행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지부가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지부장은 지부 집행부회의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쟁의대책을 요구한다.

제51조(쟁의대책위원회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 기간 동안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한다.

- ① 쟁의대책에 관한 구체적 계획 수립
- ② 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쟁의와 관련된 사항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52조(포상)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또는 지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표창 및 포상한다.

제53조(징계) 징계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조합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한다. 단 중앙운영위원 과반수가 연명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위원회에 위임한다.
 - 1. 강령, 규약 및 결의 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
 - 2.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했을 때
- ② 징계의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54조(재심)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재심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55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결의에 의한 특별 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56조(조합비) 조합비의 책정 및 납부, 분배는 다음과 같다.

- ① 조합원은 매월 급여 총액 중 1%의 조합비를 매월 급여일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조합원은 조합이 매월 급여일에 그 급여 중에서 소정의 조합비를 사용자로부터 일괄 공제 징수함을 인정한다.
- ③ 조합은 징수된 조합비 중 일정율(조합 30%, 지부 70%)의 조합비를 지부에 즉시 송금하여야 한다.

제57조(기금 및 자산)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자산의 취득, 처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조합의 기금 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회 의결로서 행한다.
- ② 조합의 자산 취득 및 처리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58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다음과 같다.

- ① 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한다.
- ③ 조합의 회계에 관한 규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원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조합 설립과 관련 경과 조치는 다음과 같다.

- ① 기존의 전국대학노동조합의 소속의 지부규정, 단체협약서, 임금협약서는 유지 하고 추후 재 체결시 대전충청지역 대학노동조합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본 규약에도 불구하고 각지부의 지부장과 지부 임원, 대의원 등은 승계한다.